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특색

Characteristic of prescription of a public prosecution in
French criminal procedure

손 병 현*
Sohn, Byung-Hyun

목 차

- I. 서 론
- II.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전반적 내용
- III.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운영상 특성
- IV. 결 론

국문초록

프랑스 형사소송법학은 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한 실체법설 또는 소송법설과 같은 개념적 논의보다는 공소시효제도의 존재론적 특성 자체에 주목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공소시효의 완성은 피고인의 사망, 사면, 형의 폐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 공소권소멸사유에 해당한다. 프랑스 형법 제213-5조에 규정된 '집단살해'와 같은 반인륜범죄와 프랑스 군형법 제L. 211-13조, 제L. 212-40조에 규정된 '적군으로의 투항, 외국에서 군작전시 전시군대의무위반항명'과 같은 중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이다. 공소시효는 범죄인이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니는

논문접수일 : 2012.06.29

심사완료일 : 2012.07.25

게재확정일 : 2012.08.02

* 법학박사 ·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기간으로만 인식될 것이 아니라 엄연히 사회공공질서의 유지에서 유래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범인 스스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범인이 언급을 않더라도 판사는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소권이 공소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다. 결국 공소시효의 완성은 공소제기의 유효조건인 동시에 실체심판의 전제조건인 소송조건의 결여에 해당하게 되므로 형사절차상 어느 단계 어떠한 원인에 대해서든 대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소시효제도와 가장 다른 특색으로는 기소 또는 수사절차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공소시효의 중단을 인정한다는 점으로 즉 형사사건해결을 위한 수사당국의 법적행위가 있게 되면 해당사건의 공소시효는 여러 차례 중단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중단되면 그간 진행되던 공소시효기간은 무효화되고 새로이 해당범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사건해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사당국은 '범죄자필벌'을 위한 적극적 실체진실발견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주제어 : 공소시효, 공소권소멸사유, 공공질서,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의 중단, 공소시효의 완성

I. 서 론

공소시효제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다른 법제보다 일반인들에게 상식적으로 특히 매스미디어¹⁾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 “정부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성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효과다.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국민적 공분(公憤)이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올 들어 9월까지 지난해 동기보다 94% 늘어난 409건이 발생할 정도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중앙일보 2011.10.08일자 사설 「도가니」대책, 공소시효 폐지도 검토해야). 이러한 여론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내용은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장애인 여성·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되었다. 아울러 장애인보호·교육시설의 장

그 취지가 우선 수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기실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는 “1973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지만 이후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다”라는 정도이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연쇄살인과 같은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조차 공소시효를 적용하여 그런 범인에게 법적시혜를 베풀 필요가 있는가?”라는 일반인의 법 감정에 상당히 위배되는 의아한 법제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현실이다. 2010년 4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소시효연장필요성이 공인되어 아동이나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때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도록 하였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동법 제7조의3 제1항, 제2항). 아울러 2012년 2월 1일 동법률의 개정²⁾으로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형법 제299조(준강간에 한정)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7조의3 제3항). 최근에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조항을 신설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³⁾

(長)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1991년 3월 26일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은 사건 발생 11년 6개월만인 2002년 9월에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었고 2006년 3월에 공소시효 15년(2007.12.21)이후 현재는 25년으로 개정됨)이 만료되면서 미제사건으로 남았으며 1986부터 시작되어 10명의 여성이 살해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사건은 1991년 4월 3일에 일어나서 2006년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 2) 동 법률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내부 데이터베이스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감시한다. 또 이들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관에서 일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적발된 전과자의 수, 적발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3개월 이상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한다(연합뉴스 2012.07.31.일자 「만 13세 미만 여아 성폭행범 공소시효 폐지」).

이런 일련의 동향을 계기로 우리나라 보다 더 오랫동안 공소시효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파악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도입할 만한 제도를 운영하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프랑스의 공소시효(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제도를 이해하기위해서는 우선 형사소송법의 해당조문과 관련판례에서 드러나는 형사절차상의 특색을 알아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형법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중죄, 경죄, 위경죄로 구분하는 범죄 심분 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공소권과 사소권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초의 행사방식과 형사소추의 권한 및 여부의 판단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가 행하고 그에 따른 수사와 재판은 예심수사판사(juge d'instruction)와 판결법원판사가 각각 담당한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형사법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상이한 형사사법기관체계로 인해 형법의 내용과 형사소송절차도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 역으로 형사법의 내용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이나 구조가 결정된다. 비교법학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유사한 법적 주제나 법제도에 대해 대상국가가 여타의 다른 나라와 내용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인지 또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나름대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장치로는 어떠한 제도들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파악·분석하여 밝히는 데에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프랑스 공소시효제도의 전반적 내용을 서술하고 그로부터 우리나라 공소시효제도와의 유사점 및 상이점을 찾아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유지되고 있는 공소시효의 특색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전반적 내용

1.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의의

가. 법적 개념

3) 법률신문 2012.06.19일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조계 반응」.

우리나라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⁴⁾이 경과되면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형소법 제249조, 현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결정)이다. 프랑스도 공소시효의 법적정의 자체는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후 검사가 일정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⁵⁾와 마찬가지이다. 즉 “범죄 행위 시부터 일정한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공소권은 소멸되고 그 결과로써 기존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가하지 않는 제도”⁶⁾라 한다. 이러한 법적개념, 형사소송법 조문⁷⁾과 관련판례의 판시내용에서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성격 또는 본질, 기간, 기산점, 공소시효의 중단,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및 배제의 필요성과 같은 내용과 절차에 대한 분석이 비롯된다.

나. 존재이유

프랑스에서 논의되는 공소시효제도의 존재이유로는 첫째, 범죄발생 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 평온’을 위해 지나간 범죄에 대한 기억이나 조사를 계속하기보다는 오히려 잊고 덮어두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비롯된다. 둘째는 범죄 실행 후 비록 범인이 검거가 되어 공소제기된 것은 아니라도 수사망 또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계속 숨고 도망하면서 겪었을 공포 또는 불안이 어쩌면 형벌에 상

4)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차용석·최용성, 「형사소송법」, 21세기사, 2008 제3판, 321면.

6) BOULOC B., Procédure pénale, Précis Dalloz, 22^e éd., 2010, n° 202.

7) 프랑스 형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pénale)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벌의 적용을 위한 공소권은 피고인의 사망, 공소시효, 사면, 형벌법규의 폐지 및 기관력에 의해 소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응'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하여 공소시효기간이 20년으로 정해진 범죄의 경우 '20여년의 불면증'이라는 표현을 예전부터 프랑스의 형사법학자들은 사용해왔다. 셋째는 '수사당국의 범죄검거나태'로 인해서 사회의 평온유지를 위한 유용한 기간 내에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잊었다고 본다. 넷째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증거의 산일'로 인한 증거능력 또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인 증명력의 신빙성하락 및 희미해진 기억과 더불어 증인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칫 사법상의 오류나 착오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위해 사법 현실 및 사회공익차원에서 공소권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다.⁸⁾ 결국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적 존재이유로 비록 범죄자가 검거되어 법의 심판과 처벌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범죄 후 장기간의 도피생활을 불안과 초조 속에서 지냈다는 것이 형벌의 사실상 대체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또 일반인의 해당 범죄인에 대한 처벌욕구도 시간의 흐름으로 약화되어간다는 실체법적 이유를 든다. 이처럼 일정시간의 경과로 생긴 사실 상태를 법적상태로 승격시켜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 즉 실질적인 처벌이유 또는 가별성의 감소, 범죄에 대한 사회옹보감정의 둔화, 피고인의 법적안정성보장에서 공소시효의 실체법적 존재이유를 든다. 하지만 이에 대해 '20여년의 불면증'이 징역형 또는 구금형과 같은 국가형벌에 상응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당범죄의 피해자,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처벌의욕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일반인들처럼 시간의 경과로 약화될 지는 의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존재이유로는 우선 지나치게 늦게 취해지는 형사소추는 범죄수사당국의 그간의 태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로 인해 일반시민이 생활하는 사회의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며 시간경과에 따라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기는 더 어려워지고 확고하지 못한 증거나 불확실하고 희미한 증언에 바탕을 둔 증인신문이나 심리가 이뤄지다보면 준엄해야할 사법적 판단에 대한 오류의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피고인의 방어권도 심각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 최종적으로는 형사소추를 담당하는 공의의 대표자인 검사나 예심수사판사가 사회공익을 깨뜨린 범인을 확보하지 못한 과실에 대한 질책 또는

8) BOULOC B., *op. cit.*, n° 203.

일종의 제재로 본다. 이처럼 시간의 경과로 증거가 산일되거나 아예 멸실되어 적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과 검사의 소추기관으로서의 권한행사태만에 대한 소송법적 비난의 필요성 즉 사회 안전을 해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국가의 태만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완전범죄를 기도하는 범인 스스로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이 공소시효제도의 소송법적 존재이유이다. 그 외에 형사소송의 중대이념 중 하나인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도 내포되어 있다.

다. 법적 성격

(1) 공소권(action publique)의 소멸사유

우리나라의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후의 형사시효인 “형의 시효(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⁹⁾와 더불어 확정판결 전의 형사시효의 일종으로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고 결국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종래 이를 ‘소송법상 제도’로 이해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해 면소판결이 선고되는데 면소판결의 성격은 형식재판이기는 하지만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이라는 특수형태의 재판이라는 견해에 따라 결국 공소시효는 ‘미확정 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상의 사유가 소송법에 반영되어 실체관계적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이해되고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프랑스의 공소시효에 관한 원칙적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인데 그 성격은 동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소시효의 완성은 피고인의 사망, 사면, 형벌법규의 폐지 및 기판력이 있는 때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실현목적을 가진 공소권의 소멸사유이다.

(2) 사회공익상의 제도

공소시효는 사회의 공공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생각에서 비롯된 사회공익상의 법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원

9)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형법 제77조).

에서는 “범인이 원한다고 스스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범죄자가 공소시효에 대한 언급을 않더라도 판사는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¹⁰⁾고 판시하였다. 공소권이 공소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역시 검사의 의무사항 중 하나이다.¹¹⁾ 공소시효의 완성에 도달한 것은 공소제기의 유효조건인 동시에 실체심판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소송조건의 결여이므로 형사절차상 어느 단계 어떠한 원인에 대해서든 대항할 수 있다.

라. 구별해야 할 개념

(1) 사소권(action civile)과의 구별

공소권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개별적 피해자에게 부여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현목적을 지닌 사소권(action civile)으로 범죄피해자는 민사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법원에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인 사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유죄가 선고될 경우 피해자를 위한 원상회복을 신속하게 도모한다. 프랑스는 이처럼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의 소를 사소(私訴)로 규정하면서 범죄 이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와는 구분하는 입장으로 사소는 민사법원 또는 형사법원에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소시효와 사소시효의 연대성’원칙에 따라 형사법원뿐만 아니라 민사법원에서의 사소제기 역시 불가능하다.¹²⁾ 그러나 공소시효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¹³⁾이므로 민사법원에서의 사소제기보다 형사법원에서의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더 불리하다는 견해에 따라 ‘공소시효와 사소시효의 연대성’원칙은 수정되었다.¹⁴⁾

10) Crim. 14 févr. 1995, *Bull.* n° 66 : Crim. 6 mai 2003, *Bull.* n° 92.

11) Crim. 19 avr. 1995, *Bull.* n° 159.

12) 김택수,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 「경찰법연구」, 통권 제2호, 2004, 177면.

13) 공소시효의 기간은 중죄의 경우 10년(형소법 제7조), 경죄의 경우 3년(형소법 제8조), 위경죄의 경우 1년(형소법 제9조)이다.

14) GUINCHARD S. & BUISSON J., *Procédure pénale*, Manuels Litec, 2^eéd., 2002, p. 476 et p. 477.

그리하여 형사소송법 제10조는 “형사법원에 제기된 사소시효는 공소권규정을 따르며 민사법원에 제기된 사소시효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즉 사소권은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형사법원에서 이를 행사할 수 없고, 민사법원에의 사소제기는 민사상 시효¹⁵⁾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언론 또는 시청각매체를 수단으로 인종, 민족차별행위 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이에 대한 사소제기는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에서 모두 불가능하게 되는 ‘공소시효와 사소시효의 연대성’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2) 형의 시효(prescription de la peine)와의 구별

형의 시효는 이미 선고되어 확정된 형벌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하게 함으로써 이를 집행할 수 없게 하는 시효이다. 이 제도의 근거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범죄로 초래된 사회혼란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사법당국의 부주의와 태만에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따를 필요가 없으며 그 동안 형벌집행을 피하기 위해 도망 다니며 고통을 받은 것도 일종의 형벌이었다는 공소시효에 대한 근거와 유사한 이유를 든다.¹⁶⁾

형의 시효기간은 선고된 형벌의 기간의 장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죄선고된 해당범죄의 성질 즉 중죄¹⁷⁾, 경죄¹⁸⁾, 위경죄¹⁹⁾ 여부에 따라 결정

15) 민사법원에 제기된 사소권의 시효는 민사상 시효와 같은 기간이 된다. 2008년 6월 17일자 민사시효 개혁에 관한 법률(*la loi n° 2008-561 du 17 juin 2008 portant réforme de la prescription en matière civile*) 이전에는 일반적 민사시효는 30년이었으나 현재는 권리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이다(민법 제2224조).

16) DESPORTES F. & LE GUNEHEC F., *Droit pénal général*, Corpus droit privé Economica, 14^eéd., 2009, p. 1057.

17) 형법 제131-1조에 의거하여, 중죄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30년, 20년,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부과할 수 있는 범죄다. 동법 제131-2조, 제131-10조에 의해, 법정된 경우에 벌금형이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금지, 면직, 권리박탈, 치료 또는 이행명령, 범행당시 사용물건의 몰수, 범죄관련 장소폐쇄, 당해판결 또는 결정의 공고 등의 보충형을 주형에 병과 할 수 있다.

18) 형법 제131-3조, 제131-4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금고형,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금고형의 대체형, 총액벌금형, 일수벌금형, 원상회복제재 등 모두 8가지 형태의 형벌 중에서 선택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범죄다. 금고형기간은 10년, 7년, 5년, 3년, 2년, 1년, 6개월, 2개월 이하의 8가지로 나뉜다.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 판사는 범죄자의 재산상태 및 범죄 등을 고려

된다. 프랑스는 중대성(gravité)의 정도에 따라 범죄행위를 세 가지로 나누는 범죄삼분체계를 취하며 중죄, 경죄, 위경죄의 형의 시효는 각 선고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20년, 5년, 3년이다(형법 제133-2조부터 제133-4조까지).

중죄를 범하여 유죄선고 받은 피고인은 형의 시효가 정해지면 그 기간 동안 범죄피해자 또는 그 직계상속인이 거주하는 행정구역상 같은 도에 체류하는 것이 금지되고(형소법 제763조), 궐석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궐석절차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이에 대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형법 제133-5조).

2.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가. 공소시효기간의 원칙

프랑스의 공소시효기간은 원칙으로 범죄의 경증에 따라 결정되는데 법정형으로 10년 징역형을 초과하는 중죄는 10년(형사소송법 제7조 제1항), 2월 이

하여 재량으로 벌금액을 책정하지만 형소법 제381조에 의해 3,750 Euros(€) 이상을 경죄의 경우에 부과하도록 하는 하한기준이 있다. 벌금액의 상한선이 법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금고형 기간에 비례하여 정해지므로 금고형 일 년을 기준으로 벌금은 최고 15,000 €를 넘지 않는다(즉 주형이 만약 6개월 금고형이면 병과될 수 있는 벌금의 최고액은 일 년 금고형에 병과될 수 있는 벌금액의 절반인 7,500 € 이하가 된다). 경죄 처벌방법은 금고형 이외에 보충형이 아닌 총액벌금형, 일수벌금형, 사회봉사명령, 시민정신연수, 형법 제131-6조에 의한 5년 이하의 운전면허정지, 범행당시 사용물건의 몰수, 5년 이하의 수표발급 또는 신용카드 사용중지, 5년 이하의 범행 관련된 직업 또는 활동금지, 3년 이하의 범행 장소에의 출입금지, 3년 이하의 다른 공범자들과의 접촉금지, 3년 이하의 피해자와의 접촉금지 등의 권리박탈·권리제한 등 구금형 대체방안이 있다. 그 외에 형법 제131-10조에 의한 범죄관련 장소폐쇄나 치료명령, 신문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법원의 판결공고와 형사재재인 동시에 민사상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징벌배상형(sanction-réparation)이 중죄와 마찬가지로 경죄에 부과될 수 있다.

- 19) 가장 경미한 형벌이 부과되는 위경죄는 종전과 달리 아예 금고형을 부과할 수 없다. 형법 제131-13조에 의해, 위경죄의 처벌로는 벌금액이 최고 3,000 €(제5급 위경죄 누범의 경우)를 넘을 수 없다. 위경죄 중 가장 경미한 38 € 이하를 부과하는 제1급 위경죄부터 750 € 이하를 부과하는 제4급 위경죄까지는 보충형을 부과할 수 없으나 상대적으로 중한 1,500 € 이하를 부과하는 제5급 위경죄처는 형법 제131-1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운전면허정지, 범죄시 사용물건의 몰수, 1년 이하의 수표발급 또는 신용카드 사용중지 등의 권리박탈·권리제한 보충형을 병과 할 수 있다.

상 10년 이하 금고형이 부과되는 경죄는 3년(동법 제8조 제1항) 그리고 벌금형이 부과되는 위경죄는 1년(동법 제9조)이다.

파기원은 위경죄사건에서 해당 위경죄가 경죄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공소시효는 1년에 해당한다고 판시²⁰⁾한다. 프랑스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공소시효기간은 배타적으로 프랑스법에 의한다고 판시²¹⁾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나. 예외적 단기규정

(1)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

「출판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자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제65조는 공연히 또는 전자매체를 통한방법으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3개월의 단기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기공소시효는 형법 제434-25조 제4항에 의해 문자나 시청각매체에 의한 보도를 수단으로 공연히 법원의 결정 또는 행위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사법권위를 실추시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2004년 3월 9일자 법률에 의해 새로이 제정된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65-3조는 민족,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여부로 인한 차별, 혐오 및 폭력을 교사하는 행위(동법 제24조 제8항), 집단살해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응호하는 메시지의 전시 및 각종 표현행위(동법 제24조 bis), 민족,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여부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동법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3항)에 대해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여 처벌에 대한 필요성 및 의욕을 나타낸다.

(2) 공직선거관련범죄

공직선거결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선거법전(Code électoral)은 동법 제L. 114조에 열거²²⁾한 공직선거관련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결과공포일로

20) Crim. 16 févr. 1993, Bull. n° 76.

21) Crim. 5 juin 1996, Bull. n° 239.

22) 선거법전 제L.86조, 제L.87조, 제L.91조부터 제L.104조, 제L.106조부터 제L.108조, 제L.113

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정하였다(선거법 제L.114조). 파기원은 선거의 진정성을 해하거나 비밀투표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투표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등 선거법 제L. 116조에 규정된 경죄는 일반형법의 징벌을 받는다고 판시²³⁾하였기에 이들 경죄의 공소시효는 원칙대로 3년이고 6월의 단기공소시효는 결국 동법 제L. 114조에 열거된 범죄에 한하여 적용된다.

(3) 사법 권위침해죄

형법 제434-25조 제1항은 “행위, 말, 문서 또는 영상에 의하여 공연히 법원의 결정 또는 행위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사법권의 권위나 독립을 저해하는 성질을 갖는 때에는 6월의 구금형 및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사법 권위침해죄를 두고 있다. 동조 제4항은 행위 시로부터 3월 이내에 예심수사법원의 수사개시 또는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규정한다.

다. 예외적 장기규정

(1) 미성년자 대상범죄

미성년자 대상범죄 중 형사소송법 제706-47조에 열거²⁴⁾된 중죄와 15세 이하²⁵⁾의 미성년자 신체의 일부상실 또는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하는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20년이다(형소법 제7조). 형사소송법 제706-47조에 열거된 경죄의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이 원칙이나

조에 열거된 죄와 제L.61조 위반행위로 예를 들어 허위성명 또는 자격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시키는 행위 또는 선거인 명부의 등재·말소증명서를 작성·교부하는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 등 각종 부정선거행위를 듈다.

23) Crim. 3 juin 1986, Bull. n° 192.

24) 범행 이전 또는 범행의 기회에 강간, 고문 또는 가혹행위를 수반하여 미성년자를 고의살인 또는 모살행위, 미성년자 대상 강간 등 성적 침해, 매춘영업, 성매매강요, 미성년자의 타락 조장, 전기통신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행위 제안, 미성년자대상 포르노그래피·폭력 물 등의 제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위해 등.

25) 폭행죄는 원래 경죄이나 15세 이하 미성년자신체의 일부상실 또는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22-10조에 의거 가중하여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죄로 취급한다.

경죄들 중에서도 15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1주 초과 노동불능에 해당하는 정도의 폭행(형법 제222-12조), 강간 이외의 가중 성적침해(형법 제222-30조), 존속 등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위해(형법 제227-26조)의 경우는 경죄임에도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20년으로 연장된다(형소법 제8조)²⁶⁾.

(2) 테러 또는 마약범죄

1987년 12월 31일자 법률 아래로 마약관련범죄에 대한 장기의 공소시효가 인정되다가 1995년 2월 8일자 법률에 의해 마약범죄에 대한 엄벌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마약밀매증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30년에 이른다. 테러행위 및 이와 관련된 범죄행위(형소법 제706-16조), 마약밀매행위 및 이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의 가담행위 등(동법 제706-26조)의 공소시효는 모두 중죄의 경우는 30년, 경죄의 경우는 20년이다(동법 제706-25-1조, 제706-31조).

(3) 우생 및 배아복제에 관한 범죄

프랑스에서 인간의 선별을 조직화하는 우생실험을 실행하는 행위는 30년 이하의 징역 및 7,5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14-1조). 우생 및 배아복제에 관한 범죄는 2004년 8월 6일자 법률로 형법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동법 제214-1조부터 제214-4조까지) 그 공소시효기간은 30년이며 특히 배아복제에 관한 중죄의 공소시효는 배아가 출산이 된 경우 성년이 되는 때로부터 기산한다(형법 제215-4조).

3.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산점

가.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원칙

26)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2년 8월 2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이 시행되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러나 입법자나 판례는 형사소추의 가능성은 더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그 이후로 정하기도 하고 범죄가 갖는 성질에 따라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다. 공소시효는 범행을 저지른 날 즉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공범의 경우 우리나라 형소법 제252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범죄가 담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 즉 범행이 완료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함으로써 모든 공범에 해당하는 공동정범과 교사범, 종범 뿐만 아닌 필요적 공범을 포함하여 동일시점을 기산점으로 한다.²⁷⁾

그러나 즉시범, 계속범, 상습범, 결합범 등 범죄의 종류 또는 범죄의 실행방법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1) 즉시범의 공소시효 기산점

살인, 상해, 방화, 모욕죄와 같이 범죄실행행위가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적 결과발생과 동시에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는 범죄인 즉시범(*infractions instantanées*)은 범죄를 저지른 날 공소시효가 기산된다. 즉시범은 결과범이고 이는 범죄를 저질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범죄행위가 종료됨을 의미한다. 파기원은 무고죄, 위증죄, 매춘영업 수익분할경죄의 경우 해당범죄의 결과발생일 즉 고소 또는 고발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이 도달한 때²⁸⁾, 거짓진술이 행해진 때²⁹⁾, 매춘영업의 수익분배시³⁰⁾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한다는 것을 판시한다. 그 외에 파산범죄의 경우 종전까지는 파산범죄로 인한 지불정지일³¹⁾로부터 기산하다가 사법적 재건절차를 여는 판결시(상법 제L. 654-16조)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절도죄, 횡령죄와 같이 범죄행위에 의해 범의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27) Crim. 8 janv. 1991, *Bull.* n° 15.

28) Crim. 24 sept. 2002, *Bull.* n° 171 : Crim. 20 mai 2003, *Bull.* n° 98.

29) Crim. 17 déc. 2002, *Bull.* n° 234.

30) Crim. 17 mars 2004, *Bull.* n° 72.

31) Crim. 6 janv. 1965, *Gaz. Pal.* 1965. 1. 360.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지만 그 위법상태는 기수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인 상태범은 우리나라에서는 위법상태의 계속여부를 기준으로 즉시범과 구분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즉시범의 테두리 안에 상태범을 포함한다. 즉시범과 상태범 모두 기수시기와 범죄의 종료시기가 일치하므로 공소시효의 기산은 둘 다 기수시로 보면 되고 굳이 나누어 볼 실익은 없다고 본다.

(가) 성질상 '잠행성'을 띠는 범죄의 경우

파기원은 특정한 즉시범의 경우 적어도 범죄가 드러날 때부터 공소시효의 기산이 되도록 늦춘다. 즉 횡령죄는 외부로 범죄자의 불법영득의사가 피해자의 재물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되고 확인될 때³²⁾에 공소시효를 기산한다. 사기죄의 경우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를 계기로 재산상 처분행위가 이뤄지려면 범죄실행단계상 범죄가 좀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잠행성(*clandestinité*)'단계를 요하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잠행단계를 지나 범죄가 드러나게 된 때³³⁾로부터 기산한다.

(나)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죄의 경우

1881년 7월 29일에 제정된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 즉 언론·출판 등을 통해 범하는 명예훼손죄 역시 즉시범으로서 명예훼손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등 출판물의 판매 시³⁴⁾에 공소시효는 기산한다. 이는 동 법률 제65조에서 규정하는 언론·출판 등 매스미디어를 수단으로 행해지는 범죄가 드러나는 때에 해당하며 바로 이때가 범행이 실행된 때이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 상에 타인의 명예훼손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명예훼손사실을 적시한 최초의 메시지가 인터넷이용자들에게 제공된 날³⁵⁾로부터이다.

32) Crim. 7 mai 2002, *Bull.* n° 107 : Crim. 8 févr. 2006, *Bull.* n° 34.

33) Crim. 7 juill. 2005, *Bull.* n° 206.

34) Crim. 13 oct. 1987, *Bull.* n° 349.

35) Crim. 27 nov. 2001, *Bull.* n° 246 : Crim. 6 janv. 2009, *Bull.* n° 4.

(2) 계속범의 공소시효 기산점

주거침입죄,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와 같이 법익침해상태가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며 기수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가 종료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 즉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하는 범죄인 계속범(*infractions continues*)은 불법상태 또는 불법활동을 종료하는 날로부터 공소시효는 기산한다.³⁶⁾ 이를테면 형법 제321-1조에서 규정하는 장물죄의 경우 장물보관을 그만둔 날의 다음날³⁷⁾에 공소시효를 기산한다. 캠핑카의 비규칙적 불법주차행위의 경우도 계속범의 일종으로 보아 그러한 비규칙적인 주차행위가 종료된 날³⁸⁾에 공소시효는 기산한다. 공중보건법위반범죄에 해당하는 담배를 옹호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선전광고 역시 계속범의 일종으로 보아 그러한 선전광고를 종료한 날³⁹⁾에 공소시효는 기산한다.

(3) 상습범과 결합범의 공소시효 기산점

상습범(*infractions d'habitude*)은 반복된 범죄에 징표된 범죄경향이 상습성으로 나타나 동일죄명 또는 동일죄질의 범행을 하면 상습범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공중보건법 제L. 4111-1조와 제L. 4161-1조 위반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의료시술행위와 형법 제434-6조에 규정된 범인은닉죄를 예로 들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의료시술이 이루어진 경우 상습성을 나타내는 마지막 범죄행위시에 공소시효는 기산한다.⁴⁰⁾ 그밖에 개별적으로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결합범은 범죄성립을 위해 성질상 다른 행위의 수행이 필요한 범죄로 이를테면 폭행·협박과 재물의 절취를 결합하여 강도죄로 하고, 강도와 강간을 결합하여 강도강간죄가 되는 경우이다. 이 결합범 역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

36) Crim. 4 janv. 1990, *Bull.* n° 9 : Crim. 30 sept. 1992, *Bull.* n° 300 : Crim. 31 janv. 2007, *Bull.* n° 24.

37) Crim. 7 mai 2002, *Bull.* n° 108.

38) Crim. 30 sept. 1992, *Bull.* n° 300.

39) Crim. 17 janv. 2006, *Bull.* n° 21, *JCP* 2006.II.10120, note Bouloc.

40) BOULOC B., *op. cit.*, n° 207.

부터 진행한다는 원칙에 충실하여 마지막 행위 시에 공소시효가 기산된다.

위에서 각각의 범죄에 따른 공소시효 기산점의 기준을 알아보았는데 법정된 공소시효의 기산점도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파기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판례는 의도적으로 범죄가 확연히 드러날 때에 비로소 공소시효의 기산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공소시효기간을 간접적으로 나마 연장하려는 수사를 담당하는 예심수사관사, 사법경찰관의 의도 그리고 판결법원법관 더 나아가서는 결국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적사고는 더 나아가 공소시효기간을 직접적으로 연장하는 수단으로써 공소시효의 중단제도와 정지제도로 연결된다.

III.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운영상 특성

역사적으로 공소시효가 실정법에 근거를 두게 된 것은 서유럽에서 조금 이르게 시작하여 19세기부터이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 각국에서 법제화되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54년 9월 23일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명문화하였다. 존재하는 법률의 형식으로 보아 공소시효는 형사 절차상으로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형사소송법의 제도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공소시효제도와 비교하여 운영상 드러나는 프랑스의 공소시효의 특색에 대해 알아본다.

1. 공소시효의 본질론에 관한 양국의 차이

가. 우리나라

(1) 실체법설

공소시효의 완성은 실체관계적 소송조건으로 형벌권의 소멸사유로 파악하는 견해⁴¹⁾이다. 따라서 실체법적 성격을 지니는 공소시효는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범죄 후 사후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나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실체법설에 대한 비판으로는 형벌권이 소멸하였다면 무죄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 논리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의거하여 면소판결의 선고를 규정한 이유를 설명하기가 곤란하며 또한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실체법상의 형벌권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이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은 공소시효는 소추기관의 태만에 대한 비난으로 국가의 소추권을 상실시키는 소송법상 자유인 소송조건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그 논거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증거가 산일되어 진실발견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⁴²⁾ 아울러 신소송법설은 공소시효에 대해서 시간경과에 따른 불안정한 개인의 지위를 안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실현의 형사소송법상의 이념에 기여하는 개인의 권리보장제도로 이해한다.⁴³⁾ 따라서 소송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공소시효는 소급효금지원칙과는 무관하여 범죄 후 사후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⁴⁴⁾ 독일판례의 입장⁴⁵⁾과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면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다수설의 입장을 나타낸다. 이 소송법설에 대한 비판으로는, 면소판결의 본질에 대해 대법원판례⁴⁶⁾와 통설⁴⁷⁾이 취하는 실체심리를 행하지 않는 형식재판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공소권소멸을 이유로 한 실체면

41) 김희옥, “공소시효”, 「고시연구」, 1987년 2월호, 46면.

42)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제9판, 363면 ; 백형구,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제4판, 116면.

43) 차용석·최용성, 전제서, 323면.

44) 신소송법설에서는 법의 적정절차의 보장과 무관한 소송현상은 소급입법의 적용을 받지만 시효문제는 헌법상의 법의 적정절차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불이익한 소급은 금지된다고 한다(차용석·최용성, 전제서, 323면).

45) BGHSt 2, 300 : BGHSt 11, 393 : BVerfGE 25, 269.

46) 대판 1964.3.31. 64도64 : 대판 1966.7.26. 66도634.

47)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4, 536면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1 제3판, 989면 ; 이재상, 전제서, 609면 ; 차용석·최용성, 전제서, 708면.

에 관한 사유를 소송조건으로 하는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⁴⁸⁾에 따르면 공소시효와 실체법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면소확정판결의 기판력도 인정된다. 또 소송법설에 의할 경우 공소시효기간이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상이한 점을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3) 경합설

공소시효는 실체법과 소송법의 양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견해로 그 논거로는 가별성의 감소와 증거의 산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테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본다.⁴⁹⁾ 경합설에 대한 비판으로는 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한 일종의 절충적 견해로 그 절충적 성격으로 인해서 본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본질이 실체법과 소송법의 이분 법적 개념구분이라는 단순논리에 의해 파악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⁵⁰⁾ 공소시효는 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어 절차법적 성격도 있지만 아울러 실체법적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점은 특히 공소시효기간이 행위의 가별성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범죄의 가별성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제도로 실체법적 성격과 소송법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¹⁾

나. 프랑스

독일에서 비롯된 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한 학설은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의 응보감정이나 범인의 악성이 소멸하므로 미확정인 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상의 사유가 소극적 소송조건이 되어 실체재판을 저지하는 소송법적인 효과를 지니는 실체법설과 형벌권과는 상관없이 시간의

48) 송광섭,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10, 456면 ;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716면.

49) 신동운, 전계서, 312면 ;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2, 302면.

50) 김영환,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형사판례연구[5]」, 박영사, 1999, 23면.

51) 변종필, "공소시효의 제 문제 -특히 반인륜적·국가적 범죄를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 학회주최 제1회 동아시아 형사사법 국제학술회의 : 형사사법의 정비방안 학술발표자료」, 2006, 533면.

경과로 증거가 사라지므로 공소권행사는 억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추기관의 태만을 비난한다는 점에서 소추권을 억제하는 소송법적 성격을 지니는 소송법설의 대립을 위에서 보았다. 그 외에 공소시효의 실체법적 성격과 절차법적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별성의 감소, 증거의 감소나 산일에서 공소시효의 본질을 추구하는 절충설 또는 경합설의 태도도 알아보았다.

공소시효의 본질론은 독일 형사소송법학계의 입장이 우리나라로 이어진 것이고 프랑스에서는 위에서 다룬 학설상의 논의는 찾기 어렵다. 공소시효의 완성은 형사소송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소권의 소멸사유일 뿐이다. 파기원의 판례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없는 중단 또는 정지사유의 판단에 중점적으로 치중하여 실질적으로 사건해결을 위한 공소시효 연장의 근거를 제공한다. 형사소송법 제6조 제1항에 법문으로 명시한 것처럼 공소시효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시효가 완성되면 당해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사라지는 것이고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는 범죄적 특성이 제거되며⁵²⁾ 이는 피고인의 사망, 사면, 형벌법규의 폐지와 같은 정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본질적으로 무죄는 아니지만 사실상 무죄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휘한다. 프랑스에서의 공소시효의 본질은 절충설 또는 경합설의 입장을 떤다고 보겠으나 우리나라의 면소판결에 해당하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음으로 굳이 갈라서 설명하자면 실체법적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미 위에서 형의 시효와의 구별항목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 형법상 범죄삼분체계가 마련되어 그에 따라 공소시효기간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범죄마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공소시효의 구분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인륜범죄', '군법위반 항명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위해' 등 예외적 법적운영이 필요한 몇몇 범죄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형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대로 법정형으로 10년 징역형을 초과하는 중죄는 공소시효가 10년, 동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하는 2월 이상 10년 이하 금고형이 부과되는 경죄는 3년, 그리고 동법 제9조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되는 위경죄는 1년이라는 공소시효기간이 원칙적

52) Crim. 27 oct. 1993, Bull. n° 320 : Crim. 19 sept. 1996, Bull. n° 327 : Crim. 30 oct. 2001, Bull. n° 224.

으로 운영되면서 공소시효의 중단제도나 정지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사건의 이해관계인인 범죄피해자와 법적안정성을 목적으로 한 피고인 상호를 고려하여 범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프랑스는 범죄에 따른 공소시효기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형사특별법에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면서 파기원에서 공소시효 기산점의 기준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의 중단요건 또는 공소시효의 정지요건 등에 대해 예외적인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계속적인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2. 공소시효의 중단(interruption)을 통한 공소시효의 사실상 연장

프랑스 공소시효제도의 특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의 전반적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죄 삼분체계, 형사절차상 기소권 행사방식의 다양성, 예심수사절차, 사소당사자에 대한 이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소시효의 의미가 '범죄발생 후 검사가 일정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라는 의미자체에서 기능적으로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공소시효기간과 기산점, 중단과 정지, 완성의 효과 및 배제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프랑스는 행해진 범죄의 중대성 또는 심각성 정도에 따라 세 종류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개별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원칙상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만기로 중죄는 10년, 경죄는 3년, 위경죄는 1년이다.

예외적 단기공소시효로 일반인들의 범죄에 대한 망각이 다른 범죄에 비해 더 빨리 진행된다고 여겨지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3개월⁵³⁾, 공연히 법원판결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법 권위침해죄는 3개월, 선거법위반범죄⁵⁴⁾는 선거

53)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의 내용이 인종, 민족 또는 종교차별적이거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담게 되면 공소시효는 1년까지 연장된다(오래전에 제정된 1881년 7월 29일자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 꾸준히 개정되어 오늘날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 동법 제65-3조).

54)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3월 16일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단기공소시효기간을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하였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도 조합임원선거와 관련된 범죄에

결과공포일부터 6개월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선거법위반범죄의 공소시효도 프랑스와 동일하게 6월이지만 우리의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단서에는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프랑스 선거법에는 이러한 단서조항은 없다.

반대로 예외적 장기공소시효는 테러범죄 또는 마약밀매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테러중죄나 마약밀매중죄는 30년, 테러경죄 또는 마약밀매경죄의 경우는 20년으로 연장되었고 2004년 3월 9일자 법률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706-47조에 열거된 미성년자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은 20년으로 연장되었고 공소시효는 미성년피해자보호를 위해 성년이 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즉 프랑스에서 미성년자가 성범죄피해를 입으면 공소시효중단 또는 정지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만38세가 되어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유사한 취지에서 2004년 8월 6일자 법률에 의해 배아복제출산관여증죄(형법 제214-1조부터 제214-4조)의 공소시효기간은 30년으로 정하고 이 역시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시점에서부터 기산한다(형법 제215-4조).

우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보호를 위해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소시효의 중단’제도가 프랑스에는 1808년 11월 16일 공포된 형사소송법전의 모태법전인 속칭 ‘치죄법(Code d'instruction criminelle)’ 아래 계속 존재하여 시행되고 있다. 공소시효제도 자체를 놓고 보면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범죄자라 하겠다. 각 범죄마다 공소시효는 진행하다가 일정사유가 있게 되면 중단되는 것으로 보아 파기원 판례들⁵⁵⁾은 ‘범죄수사와 기소를 위한 검사의 다양한 절차청구행위, 수사지휘를 위해 발동하는 예심수사판사의 명령, 관할권 있는 사법경찰관의 사전수사, 예심수사법원에 사소당사자(partie civile)의 구성’ 등 일정 사유가 갖추어지면 공소시효는 중단된다고 한다. 그 효과로 진행되고 있던 이전까지의 공소시효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시점에서부터 새로

도입하여 선거관련공직자나 관련임원들의 당해 선거와 관련된 신분상의 불안정을 조기에 해소하고 신속하게 조직상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55) Crim. 25 juin 1970, Bull. n° 218 : Crim. 22 janv. 1990, Bull. n° 39 : Crim. 19 mai 2005, Bull. n° 150.

이 공소시효가 시작되어 가능한 한 미제사건들의 발생과 법망을 피해 잠적한 범죄자가 공소시효제도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 또 중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정형 5년 이하의 범죄행위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및 원상회복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6월 23일자 법률로 도입된 '형사상 화해(composition pénale)'를 검사가 제의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원상회복처분의 실행 또는 집행은 공소시효의 법적중단사유이다(형소법 제41-2조 제8항). 원상회복처분이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충실히 이행될 경우에 검사의 공소권은 소멸한다(형소법 제41-2조 제9항). 이처럼 법정된 또는 파기원 판례들을 통해 확인된 공소시효의 중단사유를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재판시효' 또는 '의제공소시효'⁵⁶⁾ 조항의 필요성은 반감될 것으로 생각한다. 흔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 법언이 민법의 소멸시효나 민사상의 채권추심에만 해당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중단제도의 충분한 활용을 통한 수사당국의 지속적인 수사와 범죄피해자의 사소당사자의 구성 등 범인색출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있게 되면 사건해결이 쉽지 않은 범죄사실증명과정에서의 정의실현에도 관련될 것으로 본다.

3. 공소시효의 다양한 정지(suspension)사유 존재

가. 법적 정지사유

우리나라의 공소시효정지사유로는 첫째, 형소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를 한 경우 둘째, 동법 제253조 제3항에 의거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셋째, 동법 제262조의 4 제1항에 의거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넷째, 「소년법」 제54조에 의한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다섯째,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에 의한 공소시효정지의 특례 여섯째, 헌법 제84조와 헌법재판소⁵⁷⁾의 결정

56)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2007.12.21 신설조항)

에 의거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이 범한 죄에 대해 재직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를 듣다.

프랑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진행되었던 기간의 효력은 유지되고 정지시킨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나머지 기간이 진행되는 공소시효의 정지제도가 존재한다. 법정공소시효정지사유로는 형사소송법 제706-47조(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성적침해), 형법 제220-30조(미성년자에 대한 가중성적침해)와 형법 제227-26조(존속 등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침해) 범죄의 경우 미성년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소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2항). 또한 1999년 6월 23일자 법률에 의해 도입된 검사에 의한 기소대체처분(alternative aux poursuites)⁵⁷⁾의 실행도중 공소시효는 정지한다(형소법 제41-1조 제2항). 그밖에 2007년 3월 5일자 법률에 의해 범죄피해자가 사소당사자를 구성하여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검사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또는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공소시효는 정지한다(형소법 제85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판례상 인정된 정지사유

법정된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외에 판례는 정지사유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57) 현재결 1995.1.20. 94헌마246.

58) 경죄법원의 양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심판을 줄이기 위해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가 아닌 '제3의 처분'에 해당하는 '조건부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대체처분'이 있다. 검사(procureur de la République)는 기소여부결정에 앞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고, 범죄로 인한 혼란이 종식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규정된 기소대체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범죄자에게 경고를 통해 법적의무를 재인식 둘째, 범죄자에게 사회시설, 직업시설에서의 재교육수강을 요구 셋째, 범죄자에게 법령의 요구대로 자신의 상황을 적법화시킬 것을 요구 넷째, 범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요구 다섯째, 피해자와 범죄자의 동의하에 '형사상 조정(médiation pénale)'에의 착수요구 여섯째,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 부부 또는 그들의 자식대상범죄의 경우,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거주지 부근에의 출현금지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신병원시설에의 수용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이러한 6가지의 기소대체처분 중에서 범죄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처분을 하나 또는 중첩하여 부과 할 수 있으므로 처분 후 사후관리 및 통제를 담당하는 조정자(médiateur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와 검사의 기소대체처분에 대한 재량적인 역할은 더 증대하고 있다.

있다. 그 원칙 또는 기준으로 파기원 전원합의체판결⁵⁹⁾에서 “시효는 유효하게 작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진행하지 않는다(*contra non valentem agere non currit praescriptio*)”라는 라틴법언을 민사시효와 마찬가지로 형사시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시효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없는 경우로는 법률적 장애요인과 사실적 장애요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법률적 장애요인

법률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대해 파기원이 판시한 내용을 보면, 공소제기를 하기위해 선결되어야 할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위 선결문제의 결정 시까지 정지된다.⁶⁰⁾ 파기원에 상고한 경우 파기원에서의 심리기간 및 파기원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 시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⁶¹⁾

예심수사종결결정 이외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한 경우 또는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한 의학적 또는 심리적 검사를 위한 조치(형소법 제81조 제9항), 범죄피해자가 예심수사판사에게 대질신문, 증인신문, 현장검증을 청구한 경우(형소법 제82-2조 제2항), 수사상 감정을 청구한 경우(형소법 제156조 제2항), 피해자 또는 그의 변호인이 감정서에 대한 자유열람 후 감정 및 재감정을 청구한 경우(형소법 제167조 제4항)에 고등법원예심수사부가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예심수사판사는 수사를 속행한다(형소법 제187조). 이때에는 예심수사판사는 공소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단지 이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⁶²⁾

(2) 사실적 장애요인

파기원은 공소시효의 정지를 요하는 사실적 장애요인으로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나 전쟁 외에 범죄 후 범인의 정신이상으로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하는 경우⁶³⁾ 등 공소제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⁶⁴⁾가 있어야 함

59) Ass. plén. 23 déc. 1999, *Bull.* n° 139.

60) Crim. 28 mars 2000, *Bull.* n° 139.

61) Crim. 5 mars 1979, *Bull.* n° 94.

62) Crim. 5 mars 2002, *Bull.* n° 53.

을 판시한다.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소시효의 중단처럼 처음부터 다시 공소시효를 진행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정지되고 있는 기간만큼의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정지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된 공소시효기간을 넘는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프랑스 공소시효제도가 범죄에 대한 철두철미한 규명 및 범죄피해자보호에 꾸준히 치중하고자하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중의 하나인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적 태도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각종 공소시효의 정지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IV. 결 론

프랑스 형사소송법에서는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의 본질에 대한 개념적 논의보다는 실증적이고 존재론적인 특성에 보다 주목한다. 형사소송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피고인의 사망, 사면, 형벌법규의 폐지 및 확정판결이 있는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권이 소멸하는 것이다. 결국 공소시효의 정지나 공소시효의 중단 없이 공소시효의 완성에 해당되는 경우는 형사절차상 어느 단계 어떠한 원인에 대해서든 대항할 수 있다. 공소제기 전 수사 중인 피의사건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 결여되어 국가의 형사소추권이 사라지는 것이고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형벌권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공소시효의 대상은 형법 제213-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집단살해'와 같은 반인륜범죄, 군형법 제L. 211-13조와 동법 제L. 212-40조의 '적군으로의 투항과 외국에서의 전시군사의무위반항명'과 같은 중범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범죄가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언제까지라도 처벌해야 할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살인사건인 경우에도 개별사례에 따라 기간이 다른 공

63) Crim. 11 juill. 2007, *Bull.* n° 185.

64) Crim. 11 juin 1985, *Bull.* n° 224 : Crim. 3 mai 1993, *Bull.* n° 162.

소시효의 적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에 발맞추어 최근에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에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항을 신설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규정돼 있는 범죄로 한정하여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만 포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같은 연쇄살인이나 집단살해와 같은 반인륜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도록 할 것이지만 형법 제250조의 보통살인죄와 같은 경우는 현재의 25년에서 30년 정도로 연장하면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를 위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절차청구행위 즉 참고인조사 등의 임의수사와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감정의 강제수사가 있게 되면 공소시효를 아예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면 시효기간에 쫓기지 않고 주어진 공소시효기간 내에서 사건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공소시효는 법적 성격자체가 사실 상태를 존중하면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위한 하나의 사회공익상의 법제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려드는 것이 모든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오늘날 참고인의 기억이나 진술에 의존하기보다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디엔에이(DNA)증거 등을 통한 과학수사를 통한 형사사건해결이 주로 이루어지므로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적절히 연장하는 것이 보다 나은 해결책이라고 본다.

프랑스는 각각의 범죄에 따른 공소시효 기산점을 가능한 한 늦게 잡는 것이 특색으로 파악된다. 파기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것을 보면 범죄의 성질상 '잠행성'을 나타내는 횡령죄 또는 사기죄의 경우 범죄가 잠행단계를 지나 범죄가 확연히 드러나면 그때 비로소 공소시효가 기산한다. 이러한 점을 통해 공소시효기간을 간접적으로나마 연장하려는 수사당국, 판결법원법관과 입법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늦추는 것이 공소시효기간을 간접적으로 연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에 공소시효기간을 직접적으로 연장하는 수단으로는 공소시효의 중단제도와 정지제도가 있다.

공소시효기간을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공소시효의 정지제도라면 범죄에 대한 계속적인 철저한 추적이나 규명의 방법으로 공소시효를 아예 중단시킬 수 있게 되고 중단시킨 사유가 소멸해야 비로소 공소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프랑스에서 수사를 담당하

는 예심수사판사나 사법경찰관이 이러한 공소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제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법정된 공소시효의 완성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범죄의 공소시효완성이 옳지 못하다고 느끼는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미제사건의 발생방지를 위해 꾸준히 수사노력을 기울이는 프랑스 형사사법제도의 결연한 태도를 특히 공소시효의 중단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적 공소시효의 중단사유와 정지사유 외에도 파기원판례를 통한 중단사유나 정지사유의 계속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4.
-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 송광섭,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10.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1.
-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2.
- 차용석·최용성, 「형사소송법」, 21세기사, 2008.
- 김영환,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형사판례연구[5]」, 박영사, 1999.
- 김택수,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 「경찰법연구」, 통권 제2호, 2004.
- 김희옥, “공소시효”, 「고시연구」, 1987년 2월호.
- 변종필, “공소시효의 제 문제-특히 반인륜적·국가적 범죄를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주최 제1회 동아시아 형사사법 국제학술회의 : 형사사법의 정비방안」, 2006.
- 법률신문 2012.06.19일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조계 반응」.
- 연합뉴스 2012.07.31.일자 「만 13세 미만 여아 성폭행범 공소시효 폐지」.

- BOULOC B., Procédure pénale, Précis Dalloz, 22^e éd..., 2010.
- DESPORTES F. & LE GUNEHEC F., Droit pénal général, Corpus droit privé Economica, 14^e éd., 2009.
- GUINCHARD S. & BUISSON J., Procédure pénale, Manuels Litec, 2^e éd., 2002.

[Résumé]

Le caractère de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dans la procédure pénale française

Sohn, Byung-Hyun

Docteur en droit, Professeur à l'Université de Halla

La prescription publique est le délai au terme duquel un acte ne peut plus faire l'objet d'investigations par enclenchement de l'action publique. Les délai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sont définis par les articles 7, 8 et 9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Les délai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des contraventions sont 1 an. Ces délais sont 3 ans, 10 ans lorsque le délit auquel se réfère l'article 706-47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a été commis contre un mineur, et 20 ans pour les délits des articles 222-125, 222-306 et 227-267 du Code pénal. Ces délais sont 10 ans en terme général et 20 pour certains crimes commis sur des mineurs(art. 706-47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Il existe également des délais spéciaux réduits, en matière de presse(art. 434-25 du Code pénal). À l'inverse, certains délais sont prolongés de manière indirecte, en droit pénal des affaires où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ne commence à courir qu'à la découverte de

l'acte délictueux. Ces délais commencent à courir à partir du lendemain de l'infraction, de sa cessation ou de sa découverte : de la majorité de la victime pour certaines infraction (art. 706-47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art. 222-12, 222-30 et 227-26 du Code pénal) ; du lendemain du dernier acte de procédure. Ces délais ne doivent pas non plus être confondus avec les délais de prescription de la peine, qui sont les délais à l'issue desquels le jugement ne peut plus être mis à exécution.

Les difficultés de mise en œuvre de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sont indiscutables. Il paraît souhaitable de revenir aux délais classique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pour toutes les infractions, à deux dérogations près : imprescriptibilité des crimes contre l'humanité : report du point de départ de la prescription à la majorité, pour des délais de même longueur, des victimes mineures au moment des faits. Dans ce même esprit, afin de ne pas en dénaturer le sens, il conviendrait d'inviter la jurisprudence à plus de cohérence et d'uniformité dans la fixation du point de départ du délai de prescription "au jour où l'infraction est apparue et a pu être constatée", en limitant de surcroît la durée totale du délai durant lequel les suspensions et interruptions pourront être légitimement accueillies au double des délais initiaux.

Parallèlement, un aménagement procédural devrait conduire à mettre en place, au sein du système français de justice pénale, par nécessité ou par anticipation de problèmes liés notamment à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des rencontres restauratives entre les parties concernées. Ces parties envisagent les conséquences de l'infraction et les moyens de favoriser leur réparation en commun. Il s'agit donc moins de créer de nouvelles modalité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que de redonner cohérence et effectivité aux dispositifs actuels, recentrés sur la reconnaissance de l'humanité des personnes concernées par le crime.

Mots-clés : procédure pénale français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investigation, victimes mineures, crimes contre l'humanité, jurisprudence

